

반도체, 디스플레이 평판 프로세스 장비 부품의 특허침해소송 - 간접침해 인정, 완제품,

반제품, 금형의 폐기 명령, 생산장비 폐기 불인정: 특허법원 2024. 2. 15. 선고 2023나

10204 판결



(1) 피고 제품을 생산. 양도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특허권자인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피고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

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2) 폐기 청구 중 부적법한 부분 - '피고 제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기타 기계 설비'에

관한 폐기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민사소송에 있어

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

되어야 하는 것인바, 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청구함에 있어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은 사회통념상 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등 참조).

- (3) '피고 제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기타 기계 설비'에 관한 폐기를 구하는 부분은 그 청구취지 기재만으로는 폐기를 구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원고가 구하는 그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주문 자체로 폐기를 명하는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제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기타 기계 설비에 관한 폐기' 청구 부분은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부적법하다.

- (4) **폐기 청구 중 받아들이는 부분** - 피고 제품을 생산. 양도함으로써 제1항 발명 및 제8항 발명에 관한 원고의 각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장래 원고의 위 특허권을 침해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특허권자인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피고의 본점, 지점, 사업소,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피고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위의 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과 위 제품의 생

산에 사용하는 금형을 모두 폐기할 의무가 있다.

첨부: 특허법원 2024. 2. 15. 선고 2023나10204 판결

지재권분쟁, 침해대응, 형사/민사소송, 손해배상, 심판소송, One-Stop 대응, A~Z 수행

---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